

## 의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 9. 27 대전광역시 교육감
2. 건 명 : 1994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안 건 요 지 : 별첨 참조
4. 검 토 의 건 : 별첨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문



1995. 10. .

'94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I. '94 세입·세출 결산검토

1. 총 관
2. 세 입
3. 세 출
4.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5. 계 속 비
6. 채권 및 채무 결산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II. 예비비 지출 검토

'94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검 토 보 고

## I. '94 세입·세출 결산검토

### 1. 총 관

####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이 월 액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세계잉여금
327,014,314	350,430,678	349,798,673	326,942,945	22,855,728	2,196,000	12,629,413	8,030,314

- '94 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97억 9,867만원으로 이는 3,270억 1,431만원인 예산액대비 6.9%가 많은 금액이며 전년도 이월액(명시 및 사고이월비와 세계잉여금)을 합한 예산현액 3,504억 3,067만원보다는 0.2%가 적은 금액임.
- 또한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9.9%, 예산현액 대비 93.3%가 집행된 3,269억 4,2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7.8%보다 5.5%가 증가된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운용이 되었다고 사료 됨.
- 이에 따라 발생된 이월액은 228억 5,57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8%가 감소된 수준이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된 유성신봉국민학교 시설공사및 책·결상 구입비가 21억 9,600만원, 사고이월된 126억 2,94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0억 3,031만원이 되겠음.

- '94 회계년도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증가율은 각각 5.2%와 4.4%로써 이는 '93년도의 예산액 및 예산현액 증가율 7.5%와 7.4%에 비해 긴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2. 세 입

전년도 대비 세입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불납결손액 (라)	미수납액 (마)	징 수 율	
						다/가	다/나
당해년도 ( '94)	327,014,314	349,817,979	349,798,673	12,574	6,731	106.9	99.9
전년도 ( '93)	310,604,724	325,562,477	325,553,292	8,822	363	104.8	99.9
증·감	5.2%	7.4%	7.4%	42.5%	1,854%	2.1%	0%

- 당해년도 수납액은 3,497억 9,86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6.9%가 초과수납 되었으나,

전년도의 명사이월 및 사고이월비를 합한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99.8%로 사실상 0.2%인 6억 3,200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감소에서 기인된 것이 되겠음.

- 징수결정액 3,498억 1,797만원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9%로 매우 높은 편이며, 미수납액 673만원은 재학생들의 수업료 체납으로 기인된 것이며,

불납 결손액은 1,257만원으로 이는 퇴학 및 제적학생들의 미납 수업료 수입 1,253만원과 산업체 특별학급의 제적학생 수업료 미납액을 결손처리한 결과임.

-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증감폭이 큰 세입 과목별 요인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 1억 1,817만원과 담배소비세 전입금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세수의 결함으로 8억 644만원이 감소하였고,
  - 또한, 학생들의 수업료 수입과 잡수입은 각각 1억 7,186만원과 1억 8,481만원이 증가되었고, 정기예금 이자 수입에서는 1억 3,21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전년도 이월사업비 234억 1,636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현액관리된 사항임.

이상과같이 수납액에 대한 증·감요인이 발생되었음은 대체적으로 사전에 예측할수 있는 세입재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며 특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고지원금의 경우 중앙부처의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액을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등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리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예산액과의 불일치를 초래한바, 앞으로의 예산운영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세 출

세 출 결 산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결정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익년도 이월액		불 용 액	비율
					명시 이월	사고이월		
당해년도 ( '94)	327, 014, 314	23, 416, 364	350, 430, 678	326, 942, 945	2, 196, 000	12, 629, 413	8, 662, 319	2. 4%
전년도 ( '93)	310, 604, 724	24, 900, 847	335, 505, 571	293, 750, 048	2, 595, 600	20, 820, 765	18, 339, 158	5. 5%
증·감	5. 23%	△5. 9%	4. 4%	11. 2%	△15. 4%	△39. 4%	△52. 8%	△3. 1%

○ 당해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한 3,270억 1,431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3,504억 3,06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4.4%가 증가 되었으며, 당해년도의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1.2%가 증가한 3,269억 4,294만원이 되겠음.

○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게 되는 이월액의 규모는 총 148억 2,541만원으로

- 명시이월액은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기인된 유성신봉국민학교의 시설공사비와 책·결상 구입비가 21억 9,600만원이고,
- 사고 이월액은 공사계약 이후 주 건축공사등의 이월에 따라 주 공정에 맞추기 위한 사유등으로 이월된 126억 2,941만원이 되 겠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39.4%가 감소 이월된 금액임.

- 당해년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4%인 86억 6,231만원이 발생된바, 이는 전년도 불용액 발생률 5.5%보다 3.1%가 줄어든 것이나 이중 상당부분은 추가예산편성시 정리함으로써 예산의 활용률을 제고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해야 함에도 직원근무복 구입등 4건에 2,677만원의 집행은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아니함에도 회계년도 마감무렵인 12월말과 다음해 2월까지의 출납 정리기간을 이용하여 집행된 것으로 당초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미리 예산에 반영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전용절차를 밟아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예산의 이체사용 및 이용, 전용

가. 이체사용 : 해당없음.

나. 이 용 :

다. 전 용

- 당해년도의 예산 전용액은 총 25건에 84억 147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의 3건 1,750만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진 금액임.

물론, 대부분의 전용액이 당초예산의 성립이후 발생한 택지개발 사업주체와의 학교용지매입계약에 따라 기인된 토지매입비 차액을 추경예산 편성시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할 경우 충분한 공사기간의 확보가 어렵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원가 상승요인이 발생되어 추가부담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용했다고는 하나 택지개발사업 주체와의 학교용지매입계약은 사실상 택지개발사업 시행 사업 시행단계에서 부터 이미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정리가 가능했다고 볼수 있겠으며 이는 당시 계룡국교와 둔산국교의 토지매입계약은 각각 7월12일과 8월4일에 체결 되었음에도 예산전용은 그 이전인 6월4일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비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혜광학교의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대전외국어 고등학교의 시설비로 전용집행한 것은 합목적인 측면에서는 공감이가나 수단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임.
- 앞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계 속 비 : 해당없음.

6. 채권 및 채무 결산

가. 채 무 관 리

(단위 :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발 생 액	소 멸 액	
계	3,712,563	6,731	3,712,563	6,731
입학금 및 수업료	223	6,731	223	6,731
대 지 료	140	0	140	0
토 지 매 각 대	3,712,200	0	3,712,200	0

○ 채권은 당해년도 총 37억 1,256만원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연차적으로 납부되는 과학고부지매각대 이행기간 도래분 37억 1,220만원 및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22만 3천원과 관암국교 부지사용료 14만원일 수납하여 삭제하고 경제사정 곤란으로 인하여 미납된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673만 1천원의 미납분은 부득이 이월하였으나 채권관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채 무 관 리

(단위 :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발 생 액	소 멸 액	
채무 부담 행위	2,616,000	20,677,206	654,000	22,639,206

○ 당회계의 채무에 있어서는 채무부담발생액 206억 7,720원으로써 이는 EXPO 아파트 단지내 학생수용을 위하여 신설된 전민국민학교와 전민중학교의 토지매입비로써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년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무행위가 발생된 것이며, '95 학생수용 대비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소요액중 부족액을 95년부터 연도별 상환계획으로 '94년도에 채무부담행위한 것임.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가. 공유 재산

(단위 : 천원)

구분	단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446,957,037		56,843,123		523,800,161
행정재산			460,211,763		61,657,475		521,869,239
소계			460,211,763		61,657,475		521,869,239
토지·임야	m <sup>2</sup>	3,965,966	269,626,983	167,283	32,521,250	4,133,249	302,148,233
건물	m <sup>2</sup>	881,252	176,665,893	80,152	26,657,960	961,403	203,323,854
공작물	식	2,946	13,717,753	161	2,456,618	3,107	16,174,371
무채재산	건	835	201,134	88	21,646	923	222,780
잠종재산			6,745,273		△4,814,351		1,930,922
소계			6,745,273		△4,814,351		1,930,922
토지·임야	m <sup>2</sup>	85,639	5,802,627	△45,686	△3,932,194	39,953	1,870,433
건물	m <sup>2</sup>	8,543	935,359	△7,077	△874,871	1,466	60,488
공작물	식	2	7,287	2	△7,287	0	0

공직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 먼저, 당해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을 '94년중에 645억 8,254만원을 취득하고 77억 3,942만원을 용도폐지와 매각·철거하여 전년도보다 568억 4,312만원이 증가한 5,238억 16만원으로써 동 회계의 재산소유는 토지 및 임야가 417만 3,202m<sup>2</sup>, 건물이 96만 2,869m<sup>2</sup>, 그리고 923건의 무채재산이 되겠음.
- 따라서 당해년도의 증·감은 46.8%를 차지하고 있는 신설학교의 건물·신축으로 266억 5,796만원의 증액이 그 주요 요인으로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적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물 품 관 리

(단위 : 천원)

전 년 도 말		당 해 년 도 말 증 · 감				당 해 년 도 말	
		취 득		처 분			
수량	현 재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8,876	15,661,608	8,377	11,863,228	274	514,710	16,979	27,010,126

- 다음은 물품관리로 당해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70억 1,012만원으로 주로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학교 신축으로 인한 물품구입이 주요 요인으로 특이한 사항없어 검토의견을 생략함.

## II. 예비비 지출 검토

###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출결정액 ①	지출액 ②	불용액 ③=①-②	지출결정 년월일	지출사유
o 1/4분기 사립유치원 수업료 환불결손액 보조사업	225,905,000	219,264,950	6,640,050	'94. 5. 25	o '94년도 1/4분기 사립유치원 수업료 (인상액) 환불결손액 보조 (92개 유치원)

- 당해년도예비비의 집행은 1/4분기 사립유치원 수업료 인상분 환불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92개 유치원에 2억 1,926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였음.
- 그 지출사유로는 이미 징수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인상분을 환불 조치하고 그 결손액을 보전하여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라는 3월3일과 3월26일자 교육부장관 지시가 있어 '94년5월25일에 지출결정한바,
- 이는 수업료의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요인이 매우 크다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나,
  - 그렇게 시급히 보조금을 교부해야할 상황이라면 제1차 추경예산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3월15일 이전에 추경예산안이 변경작성되었어야 했고, 3월15일 이후에라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1회 추경예산 시행일인 4월 26일 이후

집행했어야 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행정절차를 이행치 아니한채 예비비 지출을 우선 시행한것은 불합리한 조치로 사료되며,

-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경우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용도를 제외하고는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